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 번호 | 2388 |
|----------|------|

2018년 3월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이혜경 의원(찬성자 11명)
- 나. 발의일자 : 2018년 2월 20일
- 다. 회부일자 : 2018년 2월 21일
- 라. 상정결과 : 제27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년 2월 28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혜경 의원)

가. 제안이유

- 관광특구 내 공개 공지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특례 대상자를 대통령령에서 정한 호텔업자에서 호텔업자 외로 확대하고 연간 60일 이내의 이용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180일 이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됨.
- 상위법에 근거하여 관련 사항을 조례에 명기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공연 및 음식제공을 통해 관광객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요내용

- 관광특구 안에서 공개공지를 사용하여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제3항 신설)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건축법」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첨부)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동 개정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으로 정한 관광사업지는 관광특구 안 공개공지(空地: 공터)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연간 180일 이내에 기간 동안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 | 제6조(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 및 활용) |
| ① 시장은 법 제7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① ~ ② (현행과 같음) |
| ② 시장은 관광특구 평가를 통해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신 설> ③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 제70조(관광특구 지정)에 따라 서울시는 5개 관할 자치구에서 6개의 관광특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관광특구지정현황>

| 자치구 | 특 구 명(지정일) | 면적(m ²) | 지 정 위 치 |
|-----|--------------------------------|---------------------|--|
| 용산구 | 이 태 원 (1997.9.29.) | 383,292 |  |
| 중 구 |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2000.3.30.) | 872,809 | |
| | 동대문패션타운(2002.5.23.) | 585,709 | |
| 종로구 | 종로·청계 (2006.3.30) | 540,602 | |
| 송파구 | 잠 실 (2012.3.15) | 2,310,000 | |
| 강남구 | 강남마이스(2014.12.18) | 190,386 | |

- 본래 「건축법」 상의 공개 공지(Open Space For Public Purposes)는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적 공간으로 문화행사·관측활동은 연간 6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법령

-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6.30.>

「관광진흥법」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관광특구 안에서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2017.3.21. 개정)함.

관련 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2(「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관광사업자의 범위) 법 제7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2.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
 3.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여행업
 4.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업
 5. 제2조제1항제6호라목, 사목 및 카목에 따른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및 관광면세업

동 조례안은 관광특구 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활동의 규제를 완화 시킴으로써 서울시 5개 관광특구의 활성화 및 관광여건을 조성하는 효과를 일정 부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공중(公衆)의 이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공개 공지 확보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할 필요가 있음.

<특구 내 공개공지 현황>

| 자치구 | 관광특구명 | 공개공지 개수 | 면적(m ²) |
|-----|-------------------|---------|---------------------|
| 종로구 | 종로·청계 | 10 | 5,291.92 |
| 중 구 |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 24 | 12,196.42 |
| | 동대문패션타운 | 16 | 4,761.79 |
| 강남구 | 강남마이스 | 1 | 19,384.75 |
| 송파구 | 잠 실 | 11 | 6,545.16 |

한편 일부 자치구의 의지 부족으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위법의 관련 내용을 조례에 명기함으로써 선언적인 의미를 갖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관할 자치구는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공개공지 활용 관련 사항을 정하는 등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경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2388 |
|----------|------|

발의년월일: 2018년 2월 20일

발 의 자: 이혜경 의원(1명)

찬 성 자: 남재경, 김경자(강서), 박중화,
주찬식, 김제리, 이현찬, 김기만,
송재형, 성중기, 최호정, 박마루
의원(11명)

1. 제안이유

- 관광특구 내 공개 공지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특례 대상자를 대통령령에서 정한 호텔업자에서 호텔업자 외로 확대하고 연간 60일 이내의 이용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180일 이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됨.
- 상위법에 근거하여 관련 사항을 조례에 명기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공연 및 음식제공을 통해 관광객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관광특구 안에서 공개공지를 사용하여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동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건축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을 “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 및 활용”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광특구 안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6조(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p> <p>① 시장은 법 제7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관광특구 평가를 통해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 <p>제6조(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 및 활용)</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